

4. 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운영위원회 9명
2. 내무위원회 11명
3. 사회산업위원회 11명
4. 도시건설위원회 10명

제3조 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2. 내무위원회
 -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사회산업위원회
 - 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4. 도시건설위원회
 - 가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.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| 행 | 개 | 정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| | |
| 1. 내무위원회 12명 | 1. 운영위원회 9명 | | |
| 2. 사회·도시위원회 13명 | 2. 내무위원회 11명 | | |
| 3. 운영위원회 10명 | 3. 사회산업위원회 11명 | | |
| | 4. 도시건설위원회 10명 | | |
| 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| 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| | |
| ① (생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 | ② | | |
| 1. 내무위원회 | 1. 운영위원회 | | |
|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| | |
|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
| |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| | |
| 2. 사회·도시위원회 | 2. 내무위원회 | | |
| 가. 사회·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
| 나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
| 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3. 사회산업위원회 | | |
| 3. 운영위원회 | 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
|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| 나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
|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 |
|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| 4. 도시건설위원회 | | |
| | 가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| | |

6. 관련법규 발췌

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

제26조(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확정)

② 자치구,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는 읍·면·동을 단위로 확정하되, 선거구의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

제31조(의원의 임기) 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제50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,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,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

이 경우 시·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.

제51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부칙4조(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 만료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20조의2(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)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, 그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.

[별표7]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(제20조의2 관련)

| 구 | 분 | 설 치 가 능 한 상 임 위 원 회 (운 영 위 원 회 포 함) 의 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의정정수 41인 이상 | | 5개 이내 |
|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 | | 4개 이내 |
|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 | | 3개 이내 |

비 고 :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한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 될 때까지 위 표에 의한 상임위원회에 놓여준 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

제2조(선거구 및 선거구별의원정수)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.

[별표]

| 선 거 구 명 | 의 원 정 수 | 선 거 구 역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달 서 구 | 33 | |
| 성당 1 동 선거구 | 1 | 성당 1 동 일원 |
| 성당 2 동 선거구 | 2 | 성당 2 동 일원 |
| 두류 1 동 선거구 | 1 | 두류 1 동 일원 |
| 두류 2 동 선거구 | 2 | 두류 2 동 일원 |
| 두류 3 동 선거구 | 1 | 두류 3 동 일원 |
| 성서 1 동 선거구 | 1 | 성서 1 동 일원 |
| 성서 2 동 선거구 | 2 | 성서 2 동 일원 |
| 성서 3 동 선거구 | 2 | 성서 3 동 일원 |
| 성서 4 동 선거구 | 2 | 성서 4 동 일원 |
| 본리 동 선거구 | 2 | 본리 동 일원 |
| 월배 1 동 선거구 | 1 | 월배 1 동 일원 |
| 월배 2 동 선거구 | 2 | 월배 2 동 일원 |
| 월배 3 동 선거구 | 2 | 월배 3 동 일원 |
| 월배 4 동 선거구 | 2 | 월배 4 동 일원 |
| 월배 5 동 선거구 | 2 | 월배 5 동 일원 |
| 월배 6 동 선거구 | 2 | 월배 6 동 일원 |
| 송현 1 동 선거구 | 2 | 송현 1 동 일원 |
| 송현 2 동 선거구 | 2 | 송현 2 동 일원 |
| 본 동 선거구 | 2 | 본 동 일원 |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- 1. 내무위원회 12명
- 2. 사회도시위원회 13명
- 3. 운영위원회 10명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내무위원회

-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2. 사회·도시위원회

- 가. 사회·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운영위원회

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제5조(상임위원회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

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